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19933 판결 [구상금연대채무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199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776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정재윤

변론종결 2022. 10. 6.

판결선고 2022. 12. 1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776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창국, 판사 한승철, 판사 하승수